



북한행

엑서더스를 다시 생각한다

— 재일조선인 귀국문제

테사 모리스-스즈키

* 지은이 | 테사 모리스-스즈키 1951년 영국에서 태어나 브리스톨 대학을 거쳐 바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일본경제사·사상사이다. 1981년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가기 전에 일본에서 살며 공부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 교수(태평양아시아학부)로 재직 중이다. 한국에 번역 출간된 저서로 『우리 안의 과거』,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묻는다』, 『일본의 경제사상』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0년 5월 28일 서울대학교 소천홀에서 개최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기획 특별강연, ‘봉인된 디아스포라: 재일조선인의 ‘북한행 엑서더스’를 다시 생각한다’(Exodus to North Korea Revisited: The Repatriation of Ethnic Koreans from Japan)에서 발표된 논문을 본지에 게재하기 위해 저자인 테사 모리스-스즈키 교수가 발췌, 요약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박정진 HK연구교수가 번역했으며, 발표 논문의 전문은 서울대 일본연구소에서 문고판으로 조만간 출판될 예정이다.

1. '귀국문제'를 재고하며

필자가 처음으로 재일조선인 귀국문제¹⁾를 테마로 연구에 착수한 것은 2004년이였다. 그 후 약 6년간 이 연구에 몰두했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비밀 해제된 냉전시대 사료를 접할 수 있었고, 탈북한 귀국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귀국문제를 둘러싼 복잡하고도 논쟁적인 이야기를 접하면서, 필자 개인적으로는 방대한 역사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가 연구를 시작할 단계만 해도 귀국문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인식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60만 명의 재일조선인이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한반도의 이남 출신이었지만, 대다수가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그 지도하에 있던 (1955년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총연맹(한국에서는 조총련, 일본에서는 소련總連으로 약칭됨)을 지지하고 있었다. 1958년 여름, 조총련의 지원 하에 재일조선인 사이에서 북한으로의 귀국을 요구하는 집단적 운동이 발생했다. 아직 일본과 북한 간에는 공식적 외교관계도, 합법적 도항로도 없었던 시기였다. 곧이어 동년 8월에 북한에서 김일성이 재일조선인들의 “사회주의 조국으로의 귀국”을 환영한다고 연설했고, 이 연설은 곧 집단적 귀국운동을 극적으로 확대시켰다. 재일조선인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일본정부는 적십자 국제위원회의 개입과 감시 하에 북한 귀국희망자들의 귀국을 실현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정부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1959년 8월 인도 캘커타에서 일본 적십자사(이하, '일적')와 조선적십자 국제위원회(이하, '조적') 간의 귀국협정이 조인되었고, 1959년 12월 14일, 첫 귀국선이 니가타에서 청진을 향해 출항했다.

1) 재일조선인 귀국문제는 한국에서 통상 '북송'으로 일컬어지지만, 여기서는 저자의 한국어판 저서에 근거해 '귀국'으로 표기한다(테사 모리스-스즈키 지음, 『북한행 엑서더스』, 한철호 옮김, 책과함께, 2008). 그 외 관련한 용어의 표기 또한 이 저서의 표기에 준한다. — 옮긴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자는 다수의 인터뷰와 구 소련자료, 그리고 미국과 기타 관련 국가 및 단체들의 일차문헌들을 검토했었다. 이 중에서도 제네바에 있는 적십자 국제위원회(이하, ICRC)가 소장하고 있던 방대한 비밀문서들을 해독하는데 주력했다. ICRC 문서에서는 당시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던 것들과 매우 다른 사실들,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논의되어 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발견되었다. 무엇보다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이 필자를 놀라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1.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을 환영하는 김일성의 연설이 있기 약 3년 전인 1955년부터, 이미 일본정부와 일적, 북한당국과 조적 그리고 ICRC간에는 집단적인 귀국을 실현시키기 위한 매우 치밀하고도 비밀스러운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2. 수십만의 재일조선인을 북한으로 귀국시킬 것을 먼저 제안한 주체는 분명히 일본이었다.
3. 이데올로기적 이질성과 상이한 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북한 사이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양측은 서로를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이용하고자 했다. 귀국문제는 일본과 북한 양측 간의 상호작용 없이는 불가능했던, 그야말로 양국 공조의 산물이었다.

한편, 구 소련의 비밀 해제된 자료들을 보면 1958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은 재일조선인의 집단적 귀국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음이 확인된다. 김일성은 1958년 여름에 갑작스럽게 재일조선인들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켰던 것이다. 소련 측의 자료들은 북한이 왜 이처럼 갑작스러운 정책전환을 강행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필자가 귀국문제를 테마로 한 저서 *Exodus to North Korea*(2007)²⁾를 출간한 이후에도, 관련문서들의 추가적인 발굴이 진전되었고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새로운 분석들이 제출되었다. 이 연구들은 귀국문제의 배경에 대한 깊은 통

찰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중 박정진의 연구는 귀국문제를 포함한 냉전기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³⁾ 한편, 귀국사업이 있는 지 50주년이 되던 해에는 요미우리 위클리지의 저널리스트인 기쿠치 요시아키(菊池嘉晃)의 두 권의 저작을 포함하여 다수의 출판물들이 등장했다. 기쿠치는 필자가 *Exodus to North Korea*에서 인용했던 문서들은 물론, 좌파계열의 재일조선인 조직, 즉 조총련과 그 전신인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측의 자료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⁴⁾

이 연구들은 귀국문제와 관련된 지식의 지평을 다각적으로 넓혀 주었다. 먼저 박정진의 연구는 귀국문제가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산물이자, 북한과 민전 및 조총련 지도부 간의 매우 복잡한 정치의 결과였음을 실증했다. 기쿠치의 연구는 재일조선인의 귀국과 소련 사할린 지역 및 중국 거주 조선인의 북한 귀국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에 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한편, 박정진과 기쿠치의 연구는 필자가 *Exodus to North Korea*에서 제시했었던 주요 논점들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특히 기쿠치는 자신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북한으로의 집단적 귀국운동이 일본 측에서 유래했다는 주장, 즉 일본책략론(日本策略論)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이 도출된 것은 스즈키 교수가 ICRC 문서에 지나치게 의존한 반면, ICRC 문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북한의 동향이나 민전 및 조총련의 초창기 귀국운동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⁵⁾ 기쿠치의 비판만큼 표현이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메이지 대학의 가와시마 다카미네(川島高峰) 교수 또한 유사한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는 대규모 귀국계획이 1955년 일본 사회당 대표들이 방북할 당시 김일성에 의해 이미 제기되었으며, 그 이후 일적과 일본정부, 그리고 일부 정치인

2) Tessa Morris-Suzuki, *Exodus to North Korea: Shadows from Japan's Cold War*,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7. — 옮김이

3) 朴正鎮, 「冷戦期日朝関係の形成(1945~1965)」, 東京大学博士論文, 2009.

4) 菊池嘉晃, 「北朝鮮帰国事業: 壮大な拉致か追放か」, 東京: 中公新書, 2009; 菊池嘉晃, 「帰国運動・帰国事業と帰国者の悲劇」, 坂中英徳·韓錫圭·菊池嘉晃, 「北朝鮮帰国者問題の歴史と課題」, 東京: 新幹社, 2009, 197~318쪽.

5) 菊池嘉晃, 「帰国運動・帰国事業と帰国者の悲劇」, 197~318쪽.

들이 북한과 재일조선인들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귀국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⁶⁾

2. '귀국문제'의 기원들, 그리고 일본의 역할

귀국문제에는 여전히 조사 연구의 과제가 남아 있는 다양한 논점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일본정부와 일적의 역할에 대한 문제만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문제는 귀국문제의 역사적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논제이자, 필자의 저서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기쿠치 요시아키는 귀국문제에 대한 일본과 북한의 역할을 논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논점에 접근하고 있다. ① 왜 귀국문제가 발생했나?, ② 왜 '집단적 귀국'으로 발전했나?, ③ 왜 비극으로 귀결되었나?⁷⁾ 기쿠치 자신은 '집단적 귀국'이라는 표현에 대해 약간의 주저함을 보이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집단적 귀국이란, 수천 또는 수만 이상 규모의 귀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걸친 몇 차례의 귀국선의 도항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중장기적 추진 계획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정의는 매우 유용하며, 필자 또한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

기쿠치는 일본이 ①과 관련한 역할, 즉 귀국추진 계획을 세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다만 계획 그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은 이 계획을 과거 어느 때보다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기쿠치는 주장한다. 그리고, 기쿠치에 의하면, ②와 ③의 논점, 즉 귀국추진 계획이 '집단적 이

6) 川島高峰, 「北朝鮮帰還事業, 今, その真実を語る: テッサ・モーリス・스ズ키氏の虚偽について」, 『光射せ』, 第4号, 2009年 12月, 84~104쪽. 가와시마 다카미네는 필자의 연구를 '허구'와 '악질적인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필자의 "호주 국립대학교 교수라는 직책은 이와 같은 악의적인 거짓말들을 통해 바뀐 것이다. 이민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온 호주정부는 이 점에 대해 반성해야만 한다"라고까지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가와시마 교수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귀국문제의 보다 정확하고 완전한 모습에 주의를 돌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각주에 그의 몇 가지 핵심적인 논의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가와시마의 논문에는 그 외에도 수많은 오류들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논문과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 한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7) 菊池嘉晃, 『帰国運動・帰国事業と帰国者の悲劇』, 303~317쪽.

민'으로 발전하고, 또한 비극으로 귀결된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과 조총련에 있다. 귀국자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고통에 대해, 북한이 국가로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필자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②의 논점에 있다. 왜 귀국이 재일조선인들의 '집단지 추방'으로 발전했나? 이 문제는 결국 귀국사업의 '규모'가 만들어 낸 것이었다. 사람들의 이동과 관련한 단순한 이야기, 90,000명 이상의 귀국자와 수십만에 달하는 그들의 친족에게까지 불행을 안겨 준 거대 사건으로 확대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충분한 해답을 서술할 수 없다. 다만 집단적 귀국추진 계획의 등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사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고자 한다.

이 사료들을 검토하기 전에, 다시 논의 출발점에 서서 두 가지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자 한다. 귀국문제의 근본적인 기원과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 일본에게는 어떠한 선택지들이 놓여 있었나?

1945년 당시, 일본에는 200만 이상의 재일조선인이 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그 중 약 7할 정도가 한반도 남쪽지역으로 귀국했지만, 60만 이상의 재일조선인은 여전히 일본에 남아 있었다. 특히 냉전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한반도 북쪽 지역으로의 인양사업은 조기 종결되고 만다. 그 결과 북한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일조선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귀국문제는 전후 일본사회에 있어 재일조선인의 불안정한 지위에서도 기원한다. 미군정의 종식과 더불어, 일본정부는 1945년 포츠담 선언의 해석을 적용해 모든 재일조선인과 대만인(이들은 그 전까지 국제법상으로 일본국적을 소유했었다)을 외국인으로 간주했다. 이 결정은 재일조선인과 대만인에게 시민권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한 미군정 법률 담당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단행된 것이었다.

이 결정으로 인한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의 변화는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이는 일본이 1951년에 막 도입한 입국관리 조례(이후 입국관리 법령)의 조항들이 과거 일본 제국의 신민들에게 소급되어 적용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법령은 국가 전복자로 간주된 자, 최소 생계를 꾸릴 능력이 없는 자,

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자,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1년 이상의 구금을 선고받은 외국인들까지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일본의 입국관리국은 이 법령을 재일조선인들과 대만인들에게 자의적으로 적용하곤 했다. 통상 범법자들은 추방통지를 받았지만, 가난하거나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가난한 재일조선인에 대해 이 법령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었고, 이것이 대규모 추방을 양산했다. 이는 이미 악화되어 있던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켰고, 국내적 혼란과 국제적 범죄의 확산을 초래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언제든 재일조선인에게 입국관리 법령을 강제 적용할 수 있었다. 입국관리 법령하에서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었다.⁸⁾

한국은 미군 점령이 끝난 후부터, 북한은 1955년 중반부터 재일조선인의 특별한 법적지위를 고려해 입국 법령의 적용면제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은 일본에서 범법자로서 추방이 결정된 재일조선인들의 송환을 거부했으며, 이것이 양국 관계를 긴장상태로 몰아갔다. 결국 1954년 10월부터 한국은 모든 재일조선인의 송환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이 때문에 1954년 상반기 413명이었던 입국관리국 산하 오무라 수용소 재일조선인 수용자들이 1957년 상반기에는 1,383명으로 급증했다.⁹⁾ 오무라 수용소에서 무기한 억류상황이 도래하자 많은 수용자들이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중에는 강력한 반공 국가이자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한국으로의 강제송환을 피하고자 북한행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1953년 재일조선인 좌파 조직인 민전이, 수백 명의 재일조선인 기술자들이 북한으로 귀국해 전후복구를 도울 수 있도록,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전개했었다. 그리고 1955년 중반부터는 수백 명의 일반 재일조선인들이 북한으로의 귀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개인적으로 도

8) 일본정부의 비밀해제 문서를 보면, 1956년에 전개된 귀국문제를 둘러싼 논의들 속에는 일본정부 측은 (그리고 일적이 생활자립이 어려운 재일조선인들을 추방할 수 있는 방도로서 국가가 직접 입국관리 법령을 발동시키는 안을 고려한 흔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외무성 관리들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안을 거부했다. "이와 같은 방도는 한국정부를 자극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었다(『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総説6(在日朝鮮人の北朝鮮帰還問題と帰還協定の締結)』, 문서번호126, 일본의무성의 한일회담 관련 제3차 개시결정문서, 2007년 11월 16일, 71쪽).

9) 法務省入国管理局, 『出入国管理白書 34年』, 東京: 大蔵省印刷局, 1959, 95쪽.

항수단을 확보해 북한으로 귀국한다면 이를 막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 왔다. 실제적인 문제는 바로 귀국에 필요한 비용이 없는 귀국희망자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195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된 이 같은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어떠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을까? 첫째, 북한으로의 귀국을 원조해 달라는 요구를 간단히 무시 또는 거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거부는 일부 재일조선인으로부터 불만을 살 것이며, 이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와 관련한 비근한 예로서 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표출되었던 '자유왕래운동'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요구와 조총련의 주도로 전개된 이 운동은 한마디로 일본과 북한 간의 자유로운 도항과 출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는 분명 인도주의적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가 단호하게 거부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 양국의 요구를 수용해 재일조선인의 특별 지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이는 사실상 1965년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수용되었다). 이 선택지는 일본정부가 북한행 귀국추진계획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택될 수 있었다. 예컨대, 입국관리국은 범죄를 저지른 재일조선인 또는 대만인들을 추방하는 대신, 그들이 형기를 마친 후 일본에 잔류할 것을 허용할 수도 있었다.¹⁰⁾ 또한 일본정부는 추방과 배제의 두려움 없이 과거 제국 시대 신민들의 복지 요구를 공식적으로 승인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오무라 수용소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며, 한국과의 국교정상화교섭 또한 보다 순조롭게 진전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내 조선인들의 지위는 보다 안정될 것이며, 그만큼 북한으로의 귀국이라는 선택지는 덜 매력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10) 물론 1957년 말경 한국정부의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 일본정부가 형기를 마친 수용자들의 일본잔류를 허용한 사례가 한 건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본정부는 범법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한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에도 일본정부의 이 권한이 포기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범죄를 이유로 재일조선인들을 강제 송환할 수 있는 재량권이 크게 제약되는 정도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日本国居住する大韓国民の法的地位および大愚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の間の協定」(1966년 4월), 3~4쪽을 참조할 것.

하지만 1950년대 중반까지 일본정부는 이 선택지를 완고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 그 대신 일본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빈곤한 재일조선인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생활보조금의 증가에 대한 거부의를 표현했다. 그리고 1956년 상반기에 그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 후생성이 약 7만 5천 명의 재일조선인들에게 지급되던 생활보조금을 삭감 또는 지급 중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작업에 착수한 것도 그러한 계획의 일환이었다.¹¹⁾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정부는 귀국사업이 시작된 해인 1959년도에 복지 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개편했다. 개편의 내용은 (재일조선인과 대만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복지 수혜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었다. 이 조치는 북한으로의 귀국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드는 것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55년 하반기부터 일본정부는 오무라 수용소 문제를 경감시키는 수단이자 재일조선인에 대한 복지비용을 삭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으로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었다.

3. '귀국문제'의 첫 단계

2007년도 하반기에 귀국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담은 문서가 일본정부에 의해 비밀 해제되었다. 이 문서는 일본과 한국의 국가 간 외교교섭의 맥락에서 귀국

11)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가 필자의 저작 *Exodus to North Korea*에 대한 서평에서 올바르게 지적한 바와 같이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던 재일조선인의 수가 8만 1천 명이 감소되었다"라고 한 기술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한다. 1956년 5월 24일 '도쿄신문' 석간에 실린 관련 보도를 보면, 결국 재일조선인들에게 지급되던 생활보조금 중 24%가 말소되었고, 30%가 절감되었다. 후생성이 조사작업을 시작하기 직전, 생활보조금 수혜를 받던 재일조선인의 총수는 117,073명이었다. 후생성의 조사결과 생활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재일조선인의 수는 약 7만 5천 명(3만 5천 명을 저자가 잘못 기재한 것이다—옮긴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1958년 이전까지 귀국희망자의 숫자가 극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생성에 의한 갑작스러운 복지해택의 삭감이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운동을 촉발시킨 원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菊池嘉晃, 「帰国運動・帰国事業と帰国者の悲劇」, 238쪽; 朴正鎮, 「冷戦期日朝關係の形成(1945~1965)」, 322쪽).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계적인 논법이다. 1956년부터 195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북한으로의 귀국루트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재일조선인들이 곧장 귀국을 지원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귀국자들에게 주거와 생활의 보장을 천명한 후에는, 재일조선인들이 북한 귀국을 결심하게 된 요인 중에 복지해택의 불안정성이라는 요인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정황적 증거가 풍부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문제의 역사를 보여 주고 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귀국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일본과 북한 양측이 어떻게 ‘공조’를 했는지가 생생하게 묘사되어진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53~54년 사이에 발생한 소위 ‘이호연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수수께끼가 남아 있지만,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미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비밀해제 문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1955년 하반기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에 주의를 돌리고자 한다.

1954년 1월, 일적은 적십자 국제연맹(League of Red Cross Societies)의 중개를 통해 북한 조적 측에 접근했다. 당시 일적은 조적 측에 북한 잔류 일본인들(그 수는 수백 명에서 2천 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었다)의 신원확인 and 이들의 귀국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을 담은 서신에는 만일 조적 측이 이 요청을 수용해 줄 경우, 일적은 “귀국(貴國)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을 도와줄 의향이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¹²⁾ 이에 대해 조적 측은 북한잔류 일본인들을 귀국시킬 준비와 태세가 되어 있다고 회답하기를 했지만, 재일조선인의 북한으로의 귀국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¹³⁾ 1955년 8월, 일적 외사부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이노우에 마사타로(井上益太郎)가 제네바에서 ICRC 당국자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 중에, 이노우에는 북한잔류 일본인들의 인양과 장래에 있을 재일조선인의 북한으로의 귀국에 대해 ICRC 측이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¹⁴⁾

박정진이 이미 지적했던 바와 같이, 1955년도에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전례없이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당시 하토야마 내각(1954년 12월~1956년 12월)의 대외정책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개선의 가능성을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었다.¹⁵⁾ 1954년 8월에 북한의 남일 외무상이 이미 (오무라 수용자를 포함한)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었고, 1955년

12) Telegram from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Geneva, to Red Cross DPRK, Pyongyang, 6 January 1954, in ICRC Archives, B AG 232 055 001, *Ressortisants japonais en Corée-du-nord*, 22/01/1954~11/05/1956.

13) Telegram from Red Cross DPRK Pyongyang to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Geneva, 6 February 1954, in ICRC Archives, B AG 232 055 001.

14) 보다 자세하게는 Morris Suzuki, *Exodus to North Korea*, pp. 85~87을 참조.

15) 朴正鎮, 「帰国運動の歴史的背景: 戦後日朝関係の開始」, 高崎宗司·朴正鎮 編著, 『帰国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 封印された日朝関係史』, 東京: 平凡社, 2005, 54~92쪽.

10월 15일에는 북한 외무성 명의로 오무라 수용자들의 석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다.¹⁶⁾ 이 일련의 움직임들은 1955년부터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국과의 간접적인 접촉의 수단으로서 재일조선인 사회에 깊숙히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1955년 5월에 조총련은 결성을 기념해서 방북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해 북한의 지도부와 접견을 했고, 동년 10월 19일에는 일본 사회당의 비공식 대표단이 방북해 김일성과 단독회담을 가졌다. 가와시마 다카미네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지도자가 재일조선인의 '귀국'을 지원할 의사를 표명한 것도 이때였다. 1955년도에 북한이 오무라 수용소 수용자와 수백만의 일반 재일조선인의 귀국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후술할 1956년 1월에서 2월에 걸친 일적과 조적 간의 공식회담과 관련한 보고문들을 포함한) 관련 문서들을 보면, 이 당시 북한은 재일조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들의 일부로서 귀국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즉, 북한 당국이 일본정부에 요구한 것은, 일부 재일조선인의 귀국만이 아니라, 그들의 복지, 고용 교육의 개선 등 보다 폭넓은 것이었다.

1955년 전반에 걸친 이 같은 상황전개와 관련하여, 비밀 해제된 일본 측의 문서들은 당시 신생 조총련의 지지하에 전개되던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요구 운동이 일본의 국익에도 상응한다는 것을 일본정부의 실세들이 재차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를 배경으로, 1955년 12월 15일 외무성 아시아국 제5과

16) "Statement of the Foreign Minister of the DPRK in protest against persecution of the Korean nationals in Japan", 30 August 1954, and "Statement of the spokesman of the Foreign Ministry of the PDRK in connection with the question of the Korean internees in Omura camp", 15 October 1955, *On the Question of 600,000 Koreans in Japan*,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59, pp. 22-28[일본어 판은 『祖国は待っている：在日同胞の帰国問題にかんする文献』, 平壤：外国文出版社, 1959 — 옮김이].

17) 이와 관련한 증거들은 구 소련 문서로 확인된다. 1958년 중반 김일성은 재일조선인들의 집단적 귀국을 추진한다는 새로운 결정을 소련 당국자에 전하는 자리에서 "2~3년 전(1955~56년경)의 경제상황이었다면 10만 규모의 재일조선인 가족을 귀국시켜 그들에게 집과 직장을 제공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후복구와 경제성장이 궤도에 들어선 후에야 비로소 집단적 귀국계획을 현실적인 정책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Record of Conversation with Comrade Kim Il Sung, 14 and 15 July 1958", in *Diary of V. I. Pelishenko*, 23 July 1958, Foreign Policy Archives of the Russian Federation, archive 0102, collection 14, file 8, folder 95).

에서는 ‘북한으로의 귀국희망자 송환문제 처리방침’(北鮮への歸還希望者の送還問題處理方針)이라는 문서가 작성되었다. 이 문서는 재일조선인의 북한 귀국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상세하게 기안된 최초의 제안서로, 이에 수반되는 ‘송환 절차 요강’(送還手續要綱)도 첨부되어 있었다. 이 문서는 귀국자의 구체적인 예상 숫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귀국계획과 관련한 전망과 등록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규모의 귀국사업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¹⁸⁾ 당시 일본 외무성의 계획은 귀국사업이 북일 양국 적십자 사이의 협상에 근거해야 하며, 일본정부의 양해와 더불어 ‘조총련의 협조’를 동반하면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귀국자의 국내 여부를 부담하기로 했고, 북한과 교섭의 전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일적에 위임되었다.

1. 송환 대상자는 생활 빈곤자에 한할 것.
2. 송환자를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북한 측의 의향을 확인할 것.
3. 송환은 조총련이 제출할 귀환 희망자 명부에 근거해 실시할 것.
4. 북한의 조적 측은 일본 측이 지정하는 항구에 송환선을 파견할 것(일본 측이 이를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음)

이 계획은 일적에 대해 “조총련을 상대로 제반 조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도록 했으며, “각 소요항목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문서를 교환”하도록 했다.¹⁹⁾ ‘각 소요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총련은 생활빈곤자 중 북한으로의 귀환을 희망하는 자를 조사해, 귀환희망자 전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일적에 제출한다.

18)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総説6」, 47쪽.

19)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総説6」, 47~50쪽.

2.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금번의 절차에 따른 북한 귀국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이 계획에 강력히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국정부를 설득하는 임무는 외무성 관료들에게 주어졌다. 통산성과 후생성에게는 귀국희망자들이 일본 국내에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운송수단을 제공하도록 했고, 입국관리국은 “조총련이 발급하는 ‘귀환증명서’에 출국을 승인하는 도장”을 찍도록 했다.²⁰⁾

당초 일부 관료들은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선으로, 인양이 예정되어 있었던 북한 잔류 일본인들이 승선할 선박을 이용하지는 않을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으로부터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 안은 곧 기각되었다. 그 대신, 일적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ICRC를 이 귀국계획에 개입시키는 안이 채택되었다.

귀국추진 계획을 담은 이 1955년 12월 15일자 문서에는 한 조항이 먹으로 삭제되어 있다. 이 조항은 현재까지 비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당시 일본 외무성이 북한으로의 대규모 귀국계획을 치밀하게 기획했으며, 이를 조총련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일적이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²¹⁾ 실제로 이 계획의 제반 절차들은 귀국사업이 실행된 1959년 12월의 그것과도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 한편, 이 계획이 완료되기 이틀 전인 1955년 12월 13일, 일적 사장 시마즈 다다쓰구(島津忠承)는 일본 외무상과 법무상의 승인 하에 제네바의 ICRC 측에 전문을 보낸 적이 있었다. 이 전문은 북한으로 귀국을 희망하는 재일조선인들의 청원서(청원자들의 이름과 숫자는 분명히 기입되어 있지는 않았다)를 동봉해, 이들의 귀국이 실현되도록 ICRC가 도와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2월 16일에는 시게미쓰 마모루(重光葵) 외무상이 국회 외무위원회에서 있는 자민당 중의원 아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0)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總說 6, 51쪽.

21) 기쿠치 요시아키도 그의 논문에서 새로 공개된 문서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호연 사건 또는 1955년 12월 당시 외무성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귀국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²²⁾ 그리고 그 다음해 1월 중순에는 자민당 외교조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재일조선인들은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의견에 동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민당 차원에서도 일적과의 접촉이 이루어졌다.²³⁾

4. 열망에서 실천으로

빈곤한 재일조선인들을 대규모로 방출시키고자 한 열망—이 열망이 인도주의적인 동기에 의해서였든 보다 냉소적인 이유였든 간에—은 단지 열망에만 머물렀을까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졌을까? 1955년 말 이후부터 귀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적이 정부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요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²⁴⁾ 1956년 재일조선인 귀국희망자들의 데모에 직면해 있던 일적은 그들을 태워 보낼 귀국선을 수배하는 한편, ICRC를 개입시키기 위해 매우 정열적으로 활동했다.²⁵⁾ 일본정부의 비밀해제 문서에는 이

22) 『第23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會議録』第12号, 1955年 12月 16日.

23) 시마즈의 전문과 자민당 외교조사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Morris-Suzuki, *Exodus to North Korea*, pp. 88-92을 참조할 것(일본어판의 경우 テッサ・モーリス・スズキ, 『北朝鮮へのエクソダス』『帰国事業』の影をたどる, 東京: 朝日新聞社, 2007, 105-107쪽). 가와시마 다카미네는 시마즈의 전문에 “이상하게도” 귀국희망 청원자들의 명단과 참여자의 수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 필자의 기술했던 바 있다. 가와시마는 이를 두고, 필자가 1955년 7월의 귀국희망자들의 도쿄 집회와 청원을 일적이 ‘조작’해 낸 것처럼 묘사하고 이를 비난하고자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川島高峰, 『北朝鮮帰還事業』, 98쪽). 하지만 필자의 저서에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긴 했지만) 1955년 7월에 이 집회가 있었음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으며, “아마도 시마즈가 12월에 보낸 전문에 동봉된 청원서는 바로 이 집회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첨언되어 있다. 즉 “이상하게도”라는 표현은 일적이 이 청원서를 조작했다는 점을 시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국희망자들이 서명자 명단이 빠진 청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필자의 의구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Morris-Suzuki, *Exodus to North Korea*, pp. 88, 90 (테ッサ・モーリス・スズキ, 『北朝鮮へのエクソダス』『帰国事業』の影をたどる, 106, 108쪽)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4) 기쿠치는 자신의 단독저서에서 일적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언급한 바 있었지만, 공저서에서는 관련된 기술들을 모두 생략했다(아마도 지면상의 문제일 것이라 생각된다). 공저서에 부록으로 수록된 「북한 귀국문제관련 연표」(北朝鮮帰国事業関連年表)에조차 관련사항이 모두 빠져 있다(坂中英徳・韓錫圭・菊池嘉晃, 『北朝鮮帰国者問題の歴史と課題』, 320~337쪽).

25) 이는 북한정부가 내각명령 제53호 ‘일본으로부터 귀국할 재일조선인의 생활을 안정화시킬 것에 대하여’를 하달하고 있던 와중에 전개되었다. 가와시미 다케미네는 이 명령을 매우 결정적인 발견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필자의 저서 *Exodus to North Korea*에서 그 존재를 지적했었고 인용도 했다(130쪽). 가와시마는 나아가 조만간 “베일에 가려졌던 첫 귀국선”의 실체를 드러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川島高峰, 『北朝鮮帰還事業』, 98쪽). 재일조선인들을 태운 첫 귀국선은 노르웨이 국적의 선박 하이리(Hai Lee)호로, 이노우에 마사타로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에 의해

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일적 외사부장 이노우에는 48명의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보였다. 그는 ICRC의 여행 비자와 귀국희망자들의 자비출국, 그리고 외국선박의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해 그들을 귀국시키고자 했다. 만일 이 시도가 성공할 경우, 점차로 많은 재일조선인이 귀국을 자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노우에의 생각이었다. 심지어 그는 많은 귀국자들이 (북한행) 배에 승선할 수 있도록, (일본 선박이었던) 코난호를 스위스 선박으로 재등록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도 했다.”²⁶⁾

1956년에서 1957년에 걸쳐, 귀국문제는 실제로 일적 지도부들과 ICRC관계자가 관여하는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귀국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취한 조치는 다양하고도 복잡적이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일적은 북한의 조적 측과의 긴밀한 서면 접촉²⁷⁾은 물론, 1956년 1월에서 2월, 그리고 6월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의 직접회담을 통해, 북한 측에 재일조선인들의 대규모 귀국의 ‘필요성’을 정열적으로 설득작업을 펼쳤다.²⁸⁾ 일적 측과 나눈 각종 서간과 전문 그리고 직접회담 등을 통해, 북한 당국자들은 일본이 ICRC를 개입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1956년 6월의 회담에서는 특히 자비로 귀국할 능력이 없는 재일조선인 귀국희망자들에게 일본과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상세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다.²⁹⁾

수배가 가능했다. 이 배는 1956년 12월 6일 당초 48명의 귀국희망자 중 20명과 그 외 3명을 추가적으로 태워서 모지(門司)항을 출항했다. 나머지 28명도 이노우에의 지속적인 원조로 1957년 3월 31일 일본어선을 타고 하카타 항을 출발해 4월 4일 무사히 북한의 청진항에 도착하게 된다(『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總說』 6, 64쪽). 가와시마 교수가 첫 귀국선과 관련해 과연 어떠한 실체를 드러낼지 사뭇 기대가 된다.

26)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記録總說』 6, 63~64쪽.

27) 예컨대 Shimazu to Li Byung Nam, 6 June 1956, ICRC Archives B AG 105-002을 참조하기 바람.

28) Inoue Masutar, “Report of the Red Cross Conference Held by the Japanese and North Korean Red Cross Societies, January 27th~February 28th 1956”, ICRC Archives B AG 232 055-001, pp. 17 and 19; Shimazu to Li Byung-Nam, 6 June 1956, ICRC Archives B AG 105-002; Inoue to Boissier, 2 July 1956, ICRC Archives B AG 232 105-002; Inoue to Boissier, 16 June 1956, ICRC Archives B AG 232 105-004.

2. 북한으로 귀국자들을 태워 보낼 적당한 운항수단을 찾아내는 데 실패한 이후³⁰⁾, 일적은 1956년 6월 초순경 소련 선박을 수배할 계획을 세웠고, 소련정부에게 이를 요구하기 위해 북한 조적을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시키고자 했다. 실제로 소련에 대한 북일 양국 적십자의 공동요구는 실천되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소련은 일본과 아직 외교관계와 직항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구는 거절되었다. 그러나 일소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인 1958년 6월, 일적은 조총련과 친북 민간단체인 일조협회 그리고 북한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소련정부가 귀국선을 배선할 수 있도록 북한정부와 접촉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³¹⁾ 소련이 북한의 조적에 크릴리온(Kryl'ion)과 토볼스크(Tobol'sk)라는 이름의 배 두 척을 제공하고, 이 배들이 귀국사업 개시 첫 두 해 동안 공식 귀국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막후교섭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일본정부의 전면적인 양해와 지원 하에 이루어진 일적의 이러한 집요한 로비활동으로, 1957년부터 ICRC의 개입을 통해 집단적 귀국사업을 성사시키

29) Inoue to Boissier, 2 July 1956, ICRC Archives B AG 232 105-002; Inoue to Boissier, 16 June 1956, ICRC Archives B AG 232 105-004, 이 회담은 이노우에 주도로 마련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와 관련해, 박정진은 이 회담이 "일적 본사 광장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던 47명(이후 48명)의 귀국문제를 의제로 하고 있었다. 이 회담 결과 양 측은 ICRC의 여행비자를 받아서 홍콩 또는 상하이 등 중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귀국시키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朴正鎭, 『冷戰期日朝關係形成(1945~1965)』, 320쪽). 하지만 이노우에는 귀국문제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맥락 속에서 이 회담을 보고 있었다. 47명(이후 48명)의 귀국자들은 자비출국을 전제로 북한으로의 귀국을 일본정부로부터 이미 승인받은 상태였다. 텐진에서 있었던 이 회담에서 구두합의된 사항은 자비출국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일제시대에 강제징용 또는 강제입영 된 사람들에게 한해 일본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었다. 한국과의 회담이 미묘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당초 자비출국이 어려운 모든 재일조선인들에게 소모되는 부담은 일단 북한 측이 부담하고, 한국과의 회담진전 추이를 본 후, 그 다음에 필요한 추가 경비는 일본 측이 지불하기로 했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oue to Boissier, 2 July 1956, ICRC Archives B AG 232 105-002을 참조하기 바람.

30) 일적은 재일조선인들을 태울 선박의 배선을 홍콩에 적을 둔 영국선박회사 버터필드(Butterfield)사에 의뢰한 바 있었다. 당시 일적의 시마즈 사장은 이 선박회사 사장에게 "한국정부로부터의 그 어떤 반대 없이 재일조선인들을 북한으로 안전하게 귀국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 배선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었다(Shimazu to Carey, 11 June 1956, in ICRC Archives B AG 232 105-004),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한 한국정부는 버퍼필드사에 일적으로부터의 의뢰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했었다.

31) Inoue Masutarô, "Report: Visit to the Omura Detention Camp, June 28 1958, p. 8. ICRC Archives, B AG 232 105-006, Problème du Rapatriement des Coréens du Japon, dossier V: année 1958, 10/10/1958-15/12/1958. Memo from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Japan Delegation (Harry Angst) to ICRC Geneva, "Distribution of Monetary Relief from the North Korean Red Cross Society among the inmates of the Omura Immigration Center on June 28 1958", 3 July 1958, p. 4. ICRC Archives, B AG 232 105-006.

기 위한 예상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1959년에 실제로 귀국사업이 착수되는 데 기초가 되는 주요 조치들로 현실화되었다.³²⁾

1957년 초반까지 이루어진 일본 측의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재일조선인들의 북한귀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지한 관심을 북한 측에 환기시켜 왔고, 귀국사업 계획에 참여하도록 ICRC를 설득해 왔으며, 귀국사업 수행 시 사용될 선박의 배선을 위한 교섭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예기치 않은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일본인 어부들을 나포하고 억류자를 늘림으로써 보복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1957년 한 해 동안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긴장상태, 특히 억류 일본인 어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의 초점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국사업 추진을 위한 구상이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1957년부터 1958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정부가 한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에서, 일적은 ICRC가 귀국사업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귀국선의 배선을 앞선하도록 로비활동을 지속했다. 귀국사업이야말로 한국으로부터의 반대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³⁾

귀국사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측과 일본 측의 동향이 결코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전개되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 측은 지속적으로 접촉했었고, 각각 이에 반응해 행동했다(물론 각각의 반응이 상대방의 예상에 항상 들어맞지는 않았다). 1958년 중반에 김일성이 재일조선인들을 집단적으로 귀국시키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일본정부가 이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지만, 이 때문에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ICRC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

32) Shimazu to Boissier, 12 January 1957, ICRC Archives B AG 232 105-005; Boissier to Shimazu, 26 February 1957, ICRC Archives B AG 232 105-005.

33) 예컨대, Shimazu to Boissier, 12 January 1957, ICRC Archives B AG 232 105-005; Durand to Angst, 1 May 1957, ICRC Archives B AG 232 105-005, Problème du rapatriement des Coréens du Japon, dossier III, 16/07/1956-08/01/1958.

을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북한의 전술 일부가 매우 선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북한이 들인 ICRC의 개입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대규모 귀국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은, 급진전 단계에 있던 한일관계에 최대한의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 취해진 면밀히 계산된 행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5. 풀리지 않은 의문들

이상에서 드러난 역사적 사실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유력정치인과 관료, 그리고 일적은 '집단적 귀국'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들은 당초부터 귀국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조직으로서, (여전히 다소 논쟁적인 주장이지만) 조총련을 잠재적인 파트너로 삼고자 했다. 조총련과 북한정부는 귀국사업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귀국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논점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 되어야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의문들도 반드시 해소되어야만 한다. 북한으로 귀국했었던 재일조선인들이 지금은 억압적인 정치·경제적 문제를 피해 탈북을 감행하고 동북아시아의 국경들을 넘고 있다. 귀국문제를 둘러싼 의문들에 대한 해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